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6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이용우 · 이재관
이재정 · 한민수 · 박균택
박지원 · 김승원 · 이용선
이광희 · 허성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, 사회적가치지표(Social Value Index, 이하 “SVI”)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따라,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·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,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,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,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,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,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).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사회적가치지표”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
· 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를 말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
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 평가
를 할 수 있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,
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고,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그 결과를 활
용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
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- ⑤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
로 정한다.

제2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, 측정·평가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“ <u>사회적가치지표</u> ”란 <u>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·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를 말한다.</u> <u>제10조의3(사회적가치지표 및 평가)</u> ① <u>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할 수 있다.</u> ② <u>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,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고,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</u> ③ <u>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.</u> ④ <u>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</u>

제2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⑤ <u>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 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2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 적가치 지표 개발, 측정·평 가에 관한 업무</u>
---	--